

---

# **납세자를 위한 상호합의절차 안내**

---

**2020. 4.**



**국제조세관리관실**

# 순 서

I . 상호합의절차(MAP)의 개관 .....	1
II. 상호합의절차(MAP)의 신청 .....	1
2.1 대상조세 .....	1
2.2 신청인 .....	2
2.3 신청 사유 .....	2
2.4 권한 있는 당국 .....	3
2.5 개시제한 사유 .....	3
2.6 신청 기간 .....	4
2.7 신청 시 제출할 서류 .....	5
2.8 개시여부 검토 .....	6
2.9 개시신청의 접수처 .....	6
III. 상호합의절차(MAP)의 진행 및 종결 .....	6
3.1 개시 .....	6
3.2 진행 .....	7
3.3 종료 .....	7
3.4 국내 소송 절차와의 관계 .....	8
3.5 행정적 권리구제 수단과의 관계 .....	8
3.6 징수유예 등의 적용 특례 .....	8
3.7 OECD 모델조세조약 상 중재제도 도입여부 .....	9
IV. 상호합의 결과의 시행 .....	10
4.1 결과의 시행 .....	10
4.2 시행기한 .....	10
V. 관련 서식 .....	11

## 머 리 말

2015년 10월 G20 회의에서 OECD가 작성한 BEPS 프로젝트(소득이전 및 세원잠식 방지 프로젝트)가 승인됨에 따라 국제거래를 둘러싼 국가 간 조세경쟁이 심화되었고, 최근 디지털 경제에 대한 과세당국들의 대응이 강화되면서 더욱 격화될 전망입니다.

국가 간 조세경쟁은 납세자의 세무상 불확실성을 가중시키는 동시에 국제거래에 대한 경제적 이중과세를 초래하여 국제거래와 무역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국세청은 조세조약에 의하여 인정된 국제적 이중과세의 해결수단인 상호합의절차를 활용하여 국제적 이중과세에 대한 납세자 권리구제를 강화하고자 본 상호합의절차 안내서를 2017년 최초로 발간하였고, 이후 법령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여 올해 개정하여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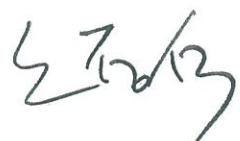
본 납세자 안내서는 국내외에서 우리나라의 상호합의절차를 이용하려는 납세자에게 우리나라 상호합의절차의 개요와 신청방식, 주의할 점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본 상호합의절차 납세자 안내서가 국내외에서 상호합의절차를 신청하고자 하는 납세자 여러분께 유용하게 활용되기를 바랍니다.

2020년 4월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

노 정석



## I. 상호합의절차(MAP)의 개관

---

상호합의절차는 조세조약의 해석이나 부당한 과세처분 또는 과세소득의 조정에 대하여 우리나라의 권한 있는 당국과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 간에 협의를 통하여 해결하는 절차를 말합니다(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이하 “국조법”, 제2조 제1항 제5호)

상호합의절차는 납세자의 신청을 전제로 하며 납세자는 서면(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이하 “국조규칙”, 별지 제4호 서식)으로 상호합의절차의 개시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상호합의절차의 개시신청이 있는 경우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국세청장은 우선 해당 개시신청이 상호합의절차 개시제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검토합니다. 그 결과 개시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국세청장은 체약 상대국에게 상호합의절차의 개시를 요청합니다. 체약상대국이 우리 측 상호합의절차의 개시요청에 동의하는 경우 양 당국은 협의절차에 착수하고 그 협의결과에 따라 조세조약에 부합하지 않는 과세처분 등을 해소하게 됩니다.

상호합의 결과는 유사 쟁점사안의 선례가 되지 않으며, 동일한 납세자의 다른 과세사안에 대한 구속력도 없습니다.

## II. 상호합의절차(MAP)의 신청

---

### 2.1 대상조세

상호합의절차는 개별 조세조약과 국조법에 따른 제도로, 개별 조세조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세를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대상이 되는 조세의 범위는 개별 조세조약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다만 대부분의 조세조약에서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등 소득에 부과되는 조세, 자본 또는 자산에 부과되는 조세가 대상이므로 상호합의절차도 상기의 조세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2.2 신청인

우리나라의 국민·거주자 또는 내국법인과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은 조세조약에 부합하지 않는 과세처분 등이 있는 경우, 개별 조세조약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우리 측 권한 있는 당국(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그의 권한을 위임 받은 자)에게 상호합의절차의 개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국조법 제22조 제1항)

종전에는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은 상호합의절차의 개시를 신청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2016년 12월 해당 법률조항을 개정하여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나 비거주자도 우리 측 권한 있는 당국에 상호합의절차의 개시신청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 2.3 신청 사유

상호합의절차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아래 3가지입니다.

- ① 조약의 해석 또는 적용에 대하여 체약상대국과 협의할 필요가 있는 경우
- ② 체약상대국의 과세당국으로부터 조세조약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과세처분을 받았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 ③ 조세조약에 따라 우리나라와 체약상대국 간에 조세조정이 필요한 경우

예를 들어 특수관계자 간 국제거래에서 설정한 거래가격이 제3자간 적용되는 정상가격과 다르다고 판단하여 과세관청이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경우(국조법 제4조), 그 과세조정에 따라 경제적 이중과세를 부담하게 된 납세자는 양 과세당국이 협의하여 경제적 이중과세를 해소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납세자의 상호합의절차 개시신청은 일반적으로는 이중과세가 있는 경우 그 이중과세의 해소를 목적으로 제기됩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중과세가 없는 과세처분이라 하더라도 그 과세처분이 조세조약 원칙에 위배되는 경우라면 상호합의절차의 개시신청이 가능합니다.

조세조약에 부합하지 않는 과세처분이 확정되어 고지되지는 않았으나 향후에 고지될 개연성이 있는 경우라면, 납세자는 확정처분 전이라 하더라도 상호 합의절차의 개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 개연성은 단순한 과세가능성만으로는 인정되지 않고, 일반적으로 과세예고통지 등 서면에 의하여 납세자와 과세당국이 관련 세목과 세액에 대해 특정할 수 있는 경우에 인정됩니다.

## 2.4 권한 있는 당국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그의 권한을 위임 받은 자(국세청장)를 말하며, 체약상대국의 경우에는 조세조약에서 권한 있는 당국으로 지정된 자를 말합니다.

국조법 제2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상호합의절차의 신청 사유에 따라,

- ① 조약의 해석 또는 적용에 대하여 체약상대국과 협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
- ② 체약상대국의 과세당국으로부터 조세조약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과세처분을 받았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국세청장
- ③ 조세조약에 따라 우리나라와 체약상대국 간에 조세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권한 있는 당국이 됩니다.

이들 권한 있는 당국은 체약상대국과의 협의를 통해 조세조약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하여 필요한 합의를 도출하거나, 조세조약에 부합하지 않는 과세처분을 해소하는 기능을 수행합니다.

## 2.5 개시제한 사유

납세자로부터 상호합의절차의 개시신청을 받은 권한 있는 당국은 해당 신청이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그 중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상호합의절차의 개시를 요청합니다.  
(국조법 제22조 제2항)

- ① 국내 또는 국외에서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 ② 조세조약상 신청 자격이 없는 자가 신청한 경우
- ③ 납세자가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상호합의절차를 이용하려고 하는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 ④ 과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나 신청한 경우

예를 들어 납세자가 조세조약 발효 전에 상호합의절차의 개시를 신청하거나 납세자가 조세조약의 효력 상실 이후에 상호합의절차의 개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호합의절차의 개시를 요청하지 않습니다.

납세자의 신청이 위의 개시제한 사유에 해당하거나, 국조법 제22조 제1항의 상호합의 신청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혹은 과세당국이 상호합의절차를 개시하지 아니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하여 합리적 조정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상호합의절차가 개시되지 않습니다.

상호합의절차 개시신청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우리 측 권한 있는 당국은 그 사실을 신청인 및 체약상대국에 통지하여야 합니다.(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국조령”, 제39조 제7항)

## 2.6 신청 기간

상호합의절차의 개시신청은 과세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가능합니다. (국조법 제22조 제2항) 일반적으로 과세사실을 안 날은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을 의미합니다. 상호합의절차의 신청기간은 국내법상 불복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정지되지 않고 계속 진행됩니다.

개별 조세조약에서 신청기간을 따로 규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최소 3년의 신청기간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 2.7 신청 시 제출할 서류

상호합의절차를 신청하는 납세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국조령 제39조 제2항)

- ① 국조규칙으로 정하는 상호합의절차 개시신청서
- ② 상호합의절차의 개시 신청과 관련된 결산서 및 세무신고서
- ③ 신청인 또는 신청인의 국외 특수관계인이 불복쟁송을 제기한 경우 그 불복쟁송 청구서

이외에도 상호합의절차 개시신청서 서식에 따라 다음의 자료와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 ① 과세예고통지서, 납세고지서, 경정청구 거부 시 경정청구서 및 거부처분 통지서류 등 권한 있는 당국이 상호합의 신청대상 과세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② 적용대상 조세조약 및 관련 조항에 관한 설명자료
- ③ 과세내용 요약, 과세대상기간에 대한 체약상대국 부과제척기간 도과여부, 과세대상거래의 사실관계, 납세자가 해당 과세처분이 조세조약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근거 및 해당 과세처분에 대한 신청인 또는 관련 국외 특수관계자의 입장에 대한 설명 자료를 포함한 납세자 의견서
- ④ 상호합의 대상이 되는 과세의 고지세액을 납부한 경우 그 납부확인서
- ⑤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상호합의를 신청하였거나 신청예정인 경우 그 신청서 사본
- ⑥ 국내 또는 국외에서 상호합의 이외의 권리구제절차를 신청하였거나 신청 예정인 경우 그 신청서 및 결정서 사본(불복쟁송 청구서 이외의 서류에 한함)
- ⑦ 국내 또는 국외에서 사전분쟁해결절차를 경유하였거나 진행 중인 경우 그 신청서 및 결정서 등 관련 자료의 사본

신청서류에 하자가 있는 경우 권한 있는 당국은 상호합의절차 개시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수정 및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2.8 개시여부 검토

상호합의절차 개시신청서를 수령한 권한 있는 당국은 해당 신청이 개시제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1차적으로 검토합니다. 신청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이를 보완하여 다시 신청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국조령 제39조 제5항)

## 2.9 개시신청의 접수처

상호합의절차 개시신청서는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국제조세협력팀) 또는 국세청 상호합의담당관실에서 접수합니다.

주소는 기획재정부의 경우 (우편번호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조세총괄정책관 조세정책과(국제조세협력팀)입니다. 국세청의 경우 (우편번호 30128) 세종특별자치시 국세청로 8-14 국세청 국제 조세관리관 상호합의담당관실입니다.

## III. 상호합의절차(MAP)의 진행 및 종결

---

### 3.1 개시

적법한 상호합의절차 개시신청이 있고 법령상 개시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우리 측 권한 있는 당국은 체약상대국에 상호합의절차의 개시를 요청합니다. 반대로 체약 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우리 측에 상호합의절차의 개시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국조법 제22조 제1항 및 제 2항, 국조령 제39조 제4항)

우리 측 권한 있는 당국이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으로부터 상호합의절차의 개시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수락하는 의사를 체약상대국에 통보한 날, 우리 측 권한 있는 당국이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게 상호합의절차의 개시를 요청한 경우에는 체약상대국으로부터 이를 수락하는 의사를 통보 받은 날이 상호합의절차의 개시일이 됩니다.(국조법 제23조 제1항) 상호합의 절차가 개시된 경우 권한 있는 당국은 상호합의절차 개시통보서에 의거하여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보할 수 있습니다.

### 3.2 진행

상호합의절차가 개시되면 우리 측 권한 있는 당국은 회의를 개최하여 체약 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과 협의를 진행합니다. 개별 조세조약은, 양국이 상호합의절차를 개시한 경우 반드시 최종적인 합의에 도달하여 이중과세 등을 해소할 의무까지 부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양 권한 있는 당국은 상호합의 사안의 해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합니다.

상호합의절차 진행 중 추가로 필요한 서류가 있는 경우, 권한 있는 당국은 상호합의절차의 개시를 신청한 납세자에게 상호합의절차의 진행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국조법 제26조 제1항)

다만 납세자가 고의적으로 자료제출을 지연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납세자가 자료제출 요구에 성실하게 협조하지 않는 경우 우리 측 권한 있는 당국이 직권으로 상호합의절차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국조법 제26조 제2항)

상호합의절차 진행 중 필요한 경우 권한 있는 당국은 납세자와 의견을 교환할 수 있습니다. 다만 권한 있는 당국이 납세자의 의견에 구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납세자는 상호합의절차 개시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 권한 있는 당국에게 사전상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사전상담의 대상에는 대상조세 해당여부, 신청인 적격, 신청기간 기산일 및 종료일, 상호합의 대상금액의 확정, 대응 조정의 방식 등 상호합의절차와 관련한 모든 내용이 포함됩니다.

### 3.3 종료

상호합의절차의 종료일은 양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상호합의절차를 진행하여 그 협의결과를 도출하고 그 도출된 결과에 대하여 서면으로 합의한 날을 말합니다.(국조법 제23조 제2항)

그 외 상호합의절차 진행 중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그 확정판결일, 상호합의절차 진행 중 신청인이 상호합의절차 개시신청을 철회하는 경우 그 신청철회일도 상호합의절차의 종료일에 해당됩니다.(국조법 제23조 제4항)

### 3.4 국내 소송절차와의 관계

상호합의절차는 국내법적인 소송절차가 진행되고 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인정됩니다.(국조법 제22조 제2항 제1호, 제23조 제4항 제1호) 상호합의절차 이외에 국내 구제절차를 진행하고자 하는 납세자는 그 심사·심판·행정소송 청구기간에 대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국세기본법 제61조, 제68조, 제56조 제3항)

상호합의절차가 개시된 경우 그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의 기간은 심사·심판·행정소송의 청구기간에 산입되지 않으며 심사·심판청구의 결정기간에도 산입되지 않습니다. 지방세의 경우에도 상호합의절차의 개시일부터 종결일까지의 기간은 지방세기본법 상의 심사·심판청구의 청구·결정기간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국조법 제24조 제1항)

예를 들어 심사청구에 따른 결정 후 소송제기기간인 90일이 만료되기 이전에 상호합의가 개시되었으나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고 종결된 경우, 소송제기기간은 상호합의 개시일부터 종결일까지 진행되지 않고 정지되므로 남은 소송제기기간 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3.5 행정적 권리구제수단과의 관계

국세기본법은 이의신청(제66조), 과세전적부심사(제81조의 15)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의신청이나 과세전적부심사가 있는 경우에도 상호합의절차의 개시신청이 가능합니다.

### 3.6 징수유예 등의 적용 특례

납세자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상호합의절차가 시작된 경우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상호합의절차의 종료일까지 고지유예, 분할고지, 징수유예, 체납처분유예(이하 “고지유예 등”)를 할 수 있습니다.(국조법 제24조 제2항 및 제6항) 다만 고지유예 등은 상호합의절차의 상대방인 체약상대국이 징수유예와 체납처분유예를 인정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국조법 제24조 제4항) 따라서 납세자가 우리 측에 상호합의와 함께 고지유예 등을 신청했더라도 상대방 국가가 상호합의절차의 진행 중에 고지유예 등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납세자에게 고지유예 등이 협용되지 않습니다.

고지유예나 분할고지의 결정이 있었다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상호합의절차 종료일의 다음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상호합의 결과에 따른 세액을 고지합니다.(국조법 제24조 제2항) 징수유예 및 체납처분유예의 경우에도 상호합의절차 종결일의 다음날부터 30일 이내에 납부기한을 다시 정하여 유예된 세액을 징수합니다.(국조법 제24조 제3항)

고지유예 등을 신청하려는 납세자는 ① 징수유예 등의 적용특례 신청서(국조규칙 별지 제15호 서식) ② 국세청장이 발행한 상호합의절차 개시통보서 사본을 갖추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청해야 합니다.(국조령 제40조 제3항) 고지유예 또는 분할고지를 신청 받은 세무서장은 국세징수법 제18조에 따라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3가지 경우에는 고지유예 등을 허용해서는 안 되며, 고지유예 등이 이미 허용된 경우라도 즉시 취소하고 유예에 관계되는 세액 및 체납액을 한꺼번에 징수하여야 합니다.(국조령 제40조 제4항)

- ① 신청인이 과거에 체납한 사실이 있는 경우
- ② 신청인이 국조법 제11조에 따른 자료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③ 조세채권이 일실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

징수유예와 체납처분유예 허용 이후 상호합의 결과에 따라 유예된 세액을 납부할 때는 이자 상당 가산액을 추가하여 납부해야 합니다.(국조법 제24조 제5항, 국조령 제41조) 이자상당 가산액 계산 시 납부지연가산세율(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4)이 적용되며 유예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기간에 대해서는 국세환급가산금이자율(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의3)이 적용됩니다.

### 3.7 OECD 모델조세조약 상 중재제도 도입 여부

현행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및 개별 조세조약은 OECD 모델조세조약 상의 강제중재제도 또는 이에 준하는 중재제도를 도입하고 있지 않습니다.

## IV. 상호합의 결과의 시행

---

### 4.1 결과의 시행

과세당국(납세자 관할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 혹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상호합의 결과에 따라 부과처분, 경정결정 또는 그 밖의 세법상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국조법 제27조 제3항)

반면 외국 과세당국이 과세한 경우에는 납세자의 경정청구가 필요합니다. 체약상대국이 과세한 사안의 경우에는 상호합의 결과를 통보 받은 납세자가 그 통보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소득금액 계산특례 신청서(국조규칙 별지 제7호 서식)에 상호합의 종결통보서(국조규칙 별지 제16호 서식)를 첨부하여 납세자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 하여야 합니다.(국조법 제10조 제1항, 국조령 제17조 제1항) 경정청구를 받은 납세자 관할 세무서장은 경정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할 수 있습니다(국조령 제17조 제3항)

### 4.2 시행기한

체약 상대국과의 상호합의절차가 시작된 경우 상호합의절차 종료일의 다음날로부터 1년의 기간과 국세기본법 상의 부과제척 기간 중 나중에 도래하는 기간까지 국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국조법 제25조)

즉, 국세기본법 상의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한 경우에도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과 상호합의를 통해 합의에 도달한다면 그 상호합의절차 종결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합의내용에 부합하는 처분이 가능합니다. 소득세 및 법인세에 부과되는 지방세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부과제척기간 특례가 적용됩니다.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4호 서식] <개정 2019. 3. 20.>

## 상호합의절차 개시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	------

### 1. 신청인 인적사항

① 법인명(상호)	② 소재국가	
③ 대표자(성명)	④ 사업자등록번호	
⑤ 업종	⑥ 전화번호	
⑦ 소재지(주소)		
⑧ 복수 신청인 여부	[ ]여 [ ]부	⑨ 복수 신청인간 관계 [ ]모자관계 (지분율: %) [ ]본점·지점 관계 [ ]기타 (관계: )

### 2. 관련기업 인적사항

⑩ 법인명(상호)	⑪ 소재국가
⑫ 대표자(성명)	⑬ 사업자등록번호
⑭ 업종	⑮ 전화번호
⑯ 소재지(주소)	
⑰ 신청인과의 관계	[ ]모자관계 (지분율: %) [ ]기타 (관계: ) [ ]본점·지점 관계

### 3. 상호합의 신청내용

⑯ 상호합의 신청사유	[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제1호 [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제2호 [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제3호		
⑯ 과세처분(예정) 사실을 안 날			
⑯ 관련 조세조약			
⑯ (예상)소득금액 또는 세액 변동내역	연번 1 2 합계	귀속연도 세목 소득금액 세액 납부세액 납부일	[ ]납부 [ ]미납부 사유
⑯ 과세처분(예정) 사실에 대한 납세자 의견 및 근거			
⑯ 체약상대국의 권리 있는 당국에 대한 상호합의 신청(예정) 여부	[ ]여 [ ]부	⑯ 체약상대국의 당국 ⑯ 연락처 전화번호 ( ) 이메일주소 ( )	⑯ 제출(예정)일자

210mm×297mm[백상지 80g/m<sup>2</sup>(재활용품)]

②⑦ 상호합의 이외의 권리구제절차 신청(예정)여부	[ ]여 [ ]부	⑧ 기관명 ⑨ 연락처	전화번호 ( ) 이메일주소 ( )	⑩ 제출(예정)일자				
⑪ 사전분쟁해결절차 경유 여부	사전답변제도		이전가격사전승인		기타 ( )			
	경유 [ ]	진행 [ ]	미경유 [ ]	경유 [ ]	진행 [ ]	미경유 [ ]	경유 [ ]	진행 [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제6호 및 제39조제2항제1호에 따라 위와 같이 상호합의 절차 개시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청인은 상호합의 절차 개시 신청서에 작성된 모든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하며 작성된 내용이 미비하거나 제출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보정요구가 있을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신청인은 개시 신청서에 작성된 내용이나 제출서류가 사실과 다른 경우 상호합의 절차가 개시되지 않거나 지연될 수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신청인은 당국 간 분쟁해결을 적극 지원할 것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기획재정부장관(또는 국세청장) 귀하**

제출서류	1. 상호합의 절차의 개시 신청과 관련된 신청인 및 관련기업의 결산서 및 세무신고서 2. 신청인 또는 신청인의 관련기업이 불복쟁송을 제기한 경우 불복쟁송 청구서 3. 과세예고통지서, 납세고지서, 경정청구 거부 시 경정청구서 및 거부처분통지서류 등 권한있는 당국이 상호합의 신청대상 과세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적용대상 조세조약 및 관련 조항에 관한 설명자료 5. 과세내용 요약, 과세대상기간에 대한 체약상대국 부과제척기간 도과여부, 과세대상거래의 사실관계, 납세자가 해당 과세처분이 조세조약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근거 및 해당 과세처분에 대한 신청인 또는 관련기업의 입장에 대한 설명자료를 포함한 납세자 의견서 6. 상호합의 대상이 되는 과세의 고지세액을 납부한 경우 그 납부확인서 7.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상호합의를 신청하였거나 신청예정인 경우 그 신청서 사본 8. 국내 또는 국외에서 상호합의 이외의 권리구제절차를 신청하였거나 신청 예정인 경우 그 신청서와 결정서 사본(불복쟁송 청구서 이외의 서류에 한함) 및 권리구제절차 신청 시 제출한 증빙자료 사본 9. 국내 또는 국외에서 사전분쟁해결절차를 경유하였거나 진행 중인 경우 그 신청서 및 결정서 등 관련 자료의 사본	수수료 없음

### 작성 방법

- 신청인이 여러 명인 경우 신청인별로 상호합의 절차 개시 신청서를 각각 작성합니다.
- ④, ⑬ 사업자등록번호란: 신청인이 외국법인인 경우로서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소재지국의 납세자 식별번호를 적습니다.
2. 관련기업 인적사항란: 소득 또는 세액조정의 상대방 기업에 관한 사항을 적습니다.
- ⑯ 과세처분(예정)사실을 안 날란: 과세예고통지서 등을 통하여 조세조약에 맞지 않는 과세처분(예정)이 있음을 안 날을 적습니다.
- ⑰ 관련 조세조약란: 납세자가 일방 혹은 쌍방 과세당국에서 잘못 적용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조세조약과 그 개별 조항을 적습니다.
- ⑱ (예상)소득금액 또는 세액 변동내역란: 귀속연도별로 세목, 소득금액, 세액을 구분하여 적습니다. 상호합의 신청대상금액에 대해서만 적되, 한국측의 과세표준이나 세액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양수(+) 한국측의 과세표준이나 세액이 감소하는 경우에는 음수(-)로 표기합니다. 납부여부와 관련하여 관련 세액을 이미 납부한 경우에는 납부일을 적고 납부확인서를 제출하며, 징수유예 등으로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납부를 선택하고 그 사유를 적습니다.
- ⑲ 과세처분(예정)사실에 대한 납세자 의견 및 근거란: 상호합의 신청대상에 대한 납세자 의견을 말하며 별지로 작성이 가능합니다.
- ⑳ 체약상대국의 권한있는 당국에 대한 상호합의 신청(예정)여부란: 동일한 과세처분에 대하여 체약상대국의 권한있는 당국에 상호합의를 신청하였거나 신청예정인 경우에는 '여'를 선택하고 ㉓란부터 ㉖란까지를 작성하며 제출된 상호합의 신청서 사본을 제출합니다.
- ㉑, ㉒ 연락처란: 이메일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란으로 처리합니다.
- ㉓ 상호합의 이외의 권리구제절차 신청(예정) 여부란: 납세자가 국내 또는 국외에 상호합의 이외의 권리구제절차를 신청하였거나 신청예정인 경우에는 '여'를 선택하고 ㉗란부터 ㉙란까지를 작성하며 권리구제절차 신청서와 결정서의 사본 및 권리구제절차 신청 시 제출한 증빙자료 사본을 제출합니다.
- ㉔ 사전분쟁해결절차 경유란: "경유"와 "진행"을 선택한 경우에는 사전분쟁조정절차 관련 자료의 사본을 제출합니다.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5호 서식] <개정 2012.2.28>

[ ] 국세  
[ ] 지방세 ] 징수유예 등의 적용특례 신청서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	-----

신청인	① 법인명(상호)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대표자(성명)	
	④ 업종	⑤ 전화번호
	⑥ 소재지(주소)	

⑦ 징수유예 등의 내용 구분

[ ] 고지유예 [ ] 징수유예 [ ] 체납처분유예 [ ] 분할고지 등 기타

납부할 세액(체납액)의 내용				징수유예(체납처분유예) 신청금액			
⑧ 세목	⑨ 연도·기분	⑩ 납부기한 (독촉기한)	⑪ 본세	⑫ 가산금	⑬ 계	⑭ 본세	⑮ 가산금

분납금액 및 납부기한

⑯ 횟수	⑰ 세목	⑱ 연도·기분	⑲ 분납기한	⑳ 세액	㉑ 이자 상당 가산액

상호 합의 개시 내용	외국의 상호합의 신청인				
	㉒ 체약상대국		㉓ 법인명(상호)		
	㉔ 특례 신청인과의 관계				
	[ ] 모자관계(지분율 %)	[ ] 본점·지점 관계	[ ] 기타(관계: )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자					
㉕ 직위		㉖ 성명			

㉗ 특례 신청기간

상호합의절차의 개시일( 년 월 일)부터 종료일까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4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3항제1호에 따라 위와 같이 징수  
유예 등의 특례를 적용받기 위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또는 지방자치단체장) 귀하

첨부서류	국세청장이 발행한 상호합의절차 개시 통보서 사본 1부	수수료 없음
------	-------------------------------	-----------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 <개정 2012.2.28>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소득금액 계산특례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2개월			
신청인	① 법인명(상호)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대표자(성명)				
	④ 업종	⑤ 전화번호			
	⑥ 소재지(주소)				
국외 관련기업	⑦ 법인명(상호)	⑧ 소재 국가			
	⑨ 대표자(성명)	⑩ 업종			
	⑪ 소재지(주소)				
	⑫ 신청인과의 관계	[ ] 모자관계(지분율: %) [ ] 기타(관계: )	[ ] 본점·지점 관계		
⑬ 상호합의 종결일	⑭ 결과통지서 수령일				
⑮ 신청인의 소득금액 조정명세	사업연도 조정항목				계
	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득금액 계산특례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첨부서류	1. 국세청장이 발급한 상호합의 종결 통보서 사본(시행령 제17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제출합니다) 2. 국세청장이 발급한 통지서(정상가격 산출방법 사전승인서) 사본(시행령 제17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음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6호 서식(1)] <개정 2012.2.28>

체약상대국	상호합의 종결 통보서(Ⅰ)		
	[한국 처분용]		
상호합의 신청인	① 법인명(상호)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대표자(성명)		
	④ 업종	⑤ 소재지(주소)	
국외 관련인	⑥ 법인명(상호)		
	⑦ 대표자(성명)		
	⑧ 업종		
	⑨ 소재지(주소)		
	⑩ 신청인과의 관계	[ ] 모자관계(지분율 %)	[ ] 본점·지점 관계
처리일	⑪ 상호합의 개시일		
	⑫ 상호합의 종결일		
⑬ 상호합의 요청 내용			
⑭ 상호합의 종결 내용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년 월 일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국세청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m<sup>2</sup>(재활용품)]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6호 서식(2)]

체약상대국	<b>상호합의 종결 통보서(II)</b> <b>[외국 처분용]</b>		
상호합의 신청인	① 법인명(상호)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대표자(성명)		
	④ 업종	⑤ 소재지(주소)	
국외 관련인	⑥ 법인명(상호)		
	⑦ 대표자(성명)		
	⑧ 업종		
	⑨ 소재지(주소)		
	⑩ 신청인과의 관계	<input type="checkbox"/> 모자관계(지분율 %)	<input type="checkbox"/> 본점·지점 관계
처리일	⑪ 상호합의 개시일		
	⑫ 상호합의 종결일		
⑬ 상호합의 요청 내용			
⑭ 상호합의 종결 내용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년 월 일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국세청장)

직인

귀하